

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배진석 의원 외 23명)

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

(배진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.

발 의 자 : 배진석·도기욱·박현국·
김창규·윤성규·윤창욱·
김봉교·한혜련·박용선·
김희수·김종영·배영애·
박권현·김지식·윤종도·
이동호·이태식·황재철·
박문하·조현일·최병준·
고우현·남천희·안희영·
의원(24명)

찬 성 자 : 4명

1. 제정이유

-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(안 제3조)

나. 도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

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마. 독도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·기관·단체·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붙임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의견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해당부서 검토의견 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6. 참고사항 :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명부 붙임

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민 등”이란 독도교육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 및 내·외국인을 말한다.
2. “독도교육”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, 해양 동·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 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계획(이하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독도교육의 활성화 방안
3. 독도교육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
4.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5. 독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6. 그 밖에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독도교육 활성화 사업)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1.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
2.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
3. 독도교육 교재 보급 사업
4. 독도관련 토론회, 세미나, 포럼, 학술대회, 전시회, 자료수집 등
5.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부나 도, 시·군이 출자·출연한 기관 및 단체
2. 대학, 연구소 등 교육·연구기관
3.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

제6조(예산지원)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, 규모,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)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·군수, 경상북도교육청(감), 독도재단, 독도 관련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관·단체·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경상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경상북도 포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관련부서 협의

1 **법제심사** (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)

○ 의견없음

2 **규제심사** (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)

○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 치 법 규 명	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		
평 가 담 당	감사관	직 급 성 명	행정7급 김덕환
입 안 주 무 부 서	독도정책관	통 보 (조 치) 일	2017. 9. 5.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
	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.		

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

□ 「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」 체크리스트(종합)

평가분야	평가항목	해당여부	응답내용	첨부사항
준수	준수부담의 적정성	X	① 적정	해당없음.
			② 높음	
	제재규정의 적정성	X	① 적당	해당없음.
			② 약함	
			③ 강함	
	특혜발생 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집행	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	X	① 구체적·객관적	해당없음.
			② 추상적·주관적	
	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	X	① 적정	해당없음.
			② 부적정	
	재정누수 가능성	X	① 명확	해당없음.
			② 불명확	
행정절차	접근의 용이성	X	① 있음	해당없음.
			② 없음	
	공 개 성	X	① 예측가능	해당없음.
			② 예측곤란	
	예측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부패통제	이해충돌 가능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	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	X	① 없음	해당없음.
			② 있음	

검 토 의 견 서

☐ 조례명 :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독도정책관	전 문	검토 의견 없음

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-

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 제정은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 있음
-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안 제5조(독도교육 활성화 사업), 제6조(예산지원)임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『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 제3조 제1항 제1호
 -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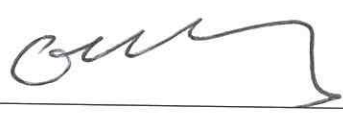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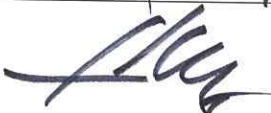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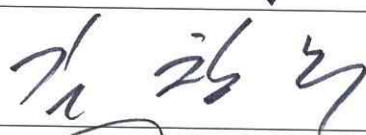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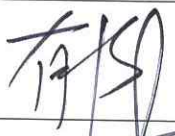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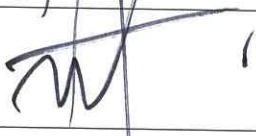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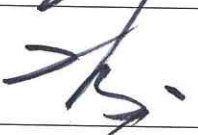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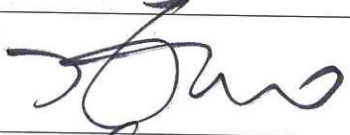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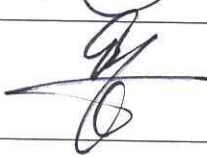
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

4. 작 성 자 : 독도정책관실 행정6급(임기제) 이소리(054-880-418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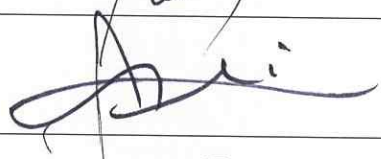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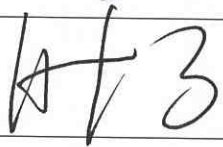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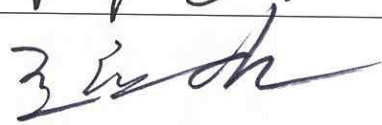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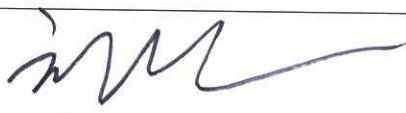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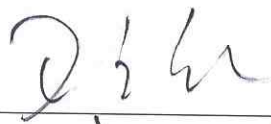
발의의원 서명명부

(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배진석		
노기욱		
박현국		
김창하		
윤성주		
윤창욱		
이봉우		
장혜진		
박용현		
가희수		
김주영		
배영미		

발의의원 서명명부

(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박 권 권		
김 리 식		
유 종 도		
이 종 료		
이 태 석		
한 제 선		
박 불 하		
조 현 일		
최 명 현		
고 우 권		
남 지 하		
한 리 영		

찬성의원 서명명부

(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조국훈	조국훈	
장석우	장석우	
이수경	이수경	
김영숙	김영숙	